

2015. 08. 17. 월요일

대구환경공단 제4호

중 국 환 경 소 식 지

수석대표 이상대 (☎ +86 186-2606-1134 / kktrlove@hanmail.net)
 부대표 김기곤 (☎ +86 186-2606-1194 / giraffeland@hanmail.net)
 중국 강소성 의흥시 녹원로 501호 환보과기빌딩 B청사 403실. (☎:070-4137-8009)

1. 대구환경공단 윤용문 이사장일행 이싱시 방문

- 지난 8월 3일에서 5일 까지 대구환경공단과 이싱환보과기공업원과의 현안업무 협의를 위하여 대구환경공단 윤용문 이사장, 류효인 신사업개발팀장과 한국종합기술 신현국 부사장께서 이곳 이싱을 방문하였으며 주요일정은 주육봉 환보과기공업원 주임과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업무인 슬러지건조관련 협력방안, 정맥산업원 추진방안, 2015 대구물산업전에 이싱시 관계자 초청 등을 논의하였으며, 왕중소 이싱시위 서기와 함께 만찬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싱시의 주요 환경시설인 국제환보성, 환경병원, 국제환경전시장(한국관), 토재생센터, 하얼빈공대이싱환보 연구원 등을 시찰하였으며, 이싱의 대표적인 환경기업인 강소전능, 강소염성화공환보 등을 방문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방문을 계기로 슬러지건조분야에 대하여 한국의 엔바이오컨스와 이싱환보과기원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여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병원에 대하여는 한국종합기술에서 적극적인 검토를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금년 10월에는 양도시에서 개최 되는 환경프로젝트에 상호 교류 방문을하기로 하였습니다.



= 환과원 관계자와 현안사항 논의 =



= 국제환보상설전시장 한국관 방문 =

2. 중국 이싱국제환보전시장 한국관 운영

- 중국 이싱국제환보전시장 한국관이 개관됨에 따라 대구환경공단 중국 tft는 한국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기업별 부스에 명함회수함을 설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관

심있는 중국기업과 매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기업별 홍보용 카타로그 또는 브로셔는 이곳 이싱에서 제작할 경우 한국내 제작(운송포함)보다 1/3가격으로 제작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중국회사법 소개

중국환경소식지에 중국의 문화, 제도, 법률 등을 시리즈로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사업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이번호는 중국의 개정된 회사법(2014년 3월 시행)에 관한 자료를 소개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① ‘최소 등록자본제’ 폐지

- 기존 회사법에서 규정한 최소 등록자본금 규정(유한책임회사 3만 위안, 1인 유한책임회사 10만 위안, 주식회사 500만 위안)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중국에서 ‘1위안 회사’ 설립이 가능해짐.
 - 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에서 회사 등록자본금의 최저 한도액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함.
- 외상투자기업(외국인투자자 포함)의 경우, 실무상 상무부의 비준을 취득해야 하고 관계 부처에서 사업규모에 따른 투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어 실제 사업규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할 가능성 큼

구 회사법	신회사법(2014)	특징
제33조 기업은 주주의 정명 또는 명칭 및 출자액을 회사등기항목에 작성해야 함.	제33조 → 제32조 ‘출자액’ 삭제	출자액에 대한 계좌개설 및 자금조사 절차가 없어짐.
제59조 제1항 1인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10만 위안임.	제59조 → 제58조 ‘등록자본금 최저 기준’ 삭제	창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1인 회사 등록자본금 최저 기준 삭제
제77조 제2항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청약 또는 모집한 전체 출자금이 법정 최저 기준보다 많아야 함.	제77조 → 제76조 제2항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청약 또는 모집한 전체 출자금이 회사 정관에 부합해야 함.	기존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는 등록자본금의 최저 금액 기준 뿐이었으나, 개정 후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가, 주식회사는 ‘자본’이 회사 설립의 기본이 됨. 인원수 및 설립 방식 또한 달라짐.
제178조 제3항 자본금 축소 신청 시 등록자본금은 법정 최저 한도액 이상이어야 함.	제178조 제3항 감자 후 최소 등록자본금 규정 삭제	-

② ‘현금출자 의무비율’ 규정 삭제

- 회사 설립 시 발기인의 등록자본금에 대한 현금출자 의무 비율(30% 이상)을 없앴.
 - 법에 따라 양도가 가능한 현물, 설비, 기술,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현금 이외의 다양한 출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구 회사법	신회사법(2014)	특징
제27조 전체 주주의 현금 출자액 비율이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의 30% 이상이어야 함.	제27조 삭제	- 기술력 있는 창업회사는 현금 출자 뿐 아니라, 기술출자 또는 기타 실물 평가가 가능한 자본으로 출자 가능

③ ‘수권자본금 등기제’ 시행(납입자본금 등기제 폐지)

- 기존 회사법에서는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관리하는 ‘납입자본금’ 등기제도가 시행됐으나, 신회사법은 납입자본금이 아닌 회사 정관에 명시된 수권자본금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수권자본금’ 등기제도로 변경
 - 즉, 유한회사의 경우 정관에 출자금을 약정한 후, 최초 출자 시 출자금의 20% 이상을 납입하고 잔여 출자금은 영업허가(營業執照)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창투사는 5년 이내, 1인 기업은 일시 불납입)에 납입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기존의 조항이 삭제됨
- 기존의 등록자본금 출자시점에 대한 제한규정이 폐지되고 등록자본금 청약제도(注冊資本認繳登記制)로 변경되면서 자본금 없이도 회사 등록이 가능해짐.
 - 납입자본금은 등기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회사의 주주가 정관에 따라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후 ‘납입자본금’의 변경등기를 진행할 필요 또한 없어짐.
 - 수권자본금 등기제는 회사 발기인이 자율적으로 등록자본금, 출자방식, 출자기한 등을 정하고 이를 회사 정관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 발기인이 승인한 등록자본금의 액수가 클수록 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도 가중됨.

구 회사법	신회사법(2014)	특징
<p>제26조 회사 전체 주주의 최초 출자액은 등록자본금의 20% 이상이어야 하고, 법정 최저 한도보다 낮을 수 없음.</p> <p>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최저 출자액은 인민폐 3만 위안(元)임. 기타 금액은 유한책임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 투자회사는 5년 이내 전부 납부</p>	<p>제26조 최초 출자액에 대한 최저 한도액 및 기한 삭제</p>	<p>‘증권법(證券法)’, ‘상업은행법(商業銀行法)’, ‘보험법(保險法)’, ‘국제화물운송대리업 관리규정(國際貨物運送代理業管理規定)’ 등에 해당되는 기업 설립 및 관리 시, 관련 기업들은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기존에 정해진 최저 등록자본금을 준수해야 함.</p>
<p>제81조 주식회사의 최초 출자액은 등록자본금의 20% 이상 이어야하고, 나머지 비용은 2년 이내, 투자회사는 5년 이내 전액 납부해야 함.</p>	<p>제81조 → 제80조 최저 기준 및 기한 삭제</p>	<p>주식회사 창립 후 용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p> <p>발기인이 청약한 자본을 전액 납입 전에는 주식 모집 및 기타 주식의 차용도 불가함.</p>
<p>제84조 주식회사는 일시 납부의 경우 출자액 전액 납입, 분할 납부의 경우 최초 출자액을 납부하여야 함.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선출 보고서에 자금조사증명서를 포함함.</p>	<p>제84조 → 제83조 주식회사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출자액을 납부함.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선출 보고서에 자금조사증명서 포함되지 않음.</p>	<p>발기인은 회사 정관에 따라 출자액을 납부함.</p>

- 또한,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액, 실제 등록자본금 등이 회사 등기 항목에서 제외되고 회사 등기 시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출자금납입증명서(驗資報告) 또한 필요서류 목록에서 삭제, 회사 등록 절차가 간소화됨.
 - 지역별,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으나, 기존에 출자금납입증명서 발급 시 발생했던 약 10만 위안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외상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변경등기 의무는 없어지나 ‘출자금납입증명서’ 제출의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
 - 현행 외환관법에 따라 출자금납입증명을 진행하지 않으면 외화자본금 계좌로 입금된 자본금을 인민폐로 환전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

구 회사법	신회사법(2014)	특징
<p>제7조 제2항 회사 등록을 위한 영업허가증(營業執照) 작성 시 아래와 같은 항목이 필요함. 기업 이름, 주소, 등록자본금(注冊資本), 납입자본(實收資本), 경영 범위, 법정대표인 성명 등</p>	<p>제7조 제2항 영업허가증 기입 항목 중 '납입자본(實收資本)' 삭제됨</p>	<p>납입자본의 삭제가 발기인의 책임 절감은 아님</p> <p>유한회사의 주주가 출자를 약속한 금액, 즉 등록자본금 액수는 기업의 자금실력, 대외민사책임 부담능력을 의미하므로 각별히 주의</p>
<p>제23조 제2항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주주들의 출자액에 대한 법정 최저 한도액이 있음</p>	<p>제23조 제2항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회사정관에 전체 주주들이 거출한 출자액이 있어야 함</p>	<p>법정 최저 한도액은 없지만, 명확한 회사 정관에 출자액 규정을 반드시 기재</p>
<p>제29조 주주들이 출자액 납입 후, 법정 자금 조사 기구를 통한 자본금검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p>	<p>제29조 삭제</p>	<p>출자액 납부 후, 회계사를 통한 자본금검증증명서 발급 절차 삭제. 이로써 회사 설립 시 기타 비용 절감 가능</p>
<p>제30조 전체 주주들이 회사 규정을 승인한 후, 회사 대표인 또는 공동대리인이 등록신청서, 회사 규정안, 자금조사 보고서, 설립신청서 등과 함께 회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p>	<p>제30조 → 제29조 회사登記 신청 서류 중 '자금조사보고서' 삭제</p>	<p>-</p>
<p>제59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10만 위안(元)</p>	<p>제59조 → 제58조 '등록자본금 최저 기준' 삭제</p>	<p>창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1인 회사 등록자본금 최저 기준 삭제</p>